

예 산 총 칙

2022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298,758,132	98,962,744
일반회계	2,810,967,116	84,329,013
특별회계	487,791,016	14,633,730
공기업특별회계	402,453,449	12,073,60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4,146,819	4,624,40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48,306,630	7,449,199
기타특별회계	85,337,567	2,560,127
교통사업 특별회계	28,808,444	864,25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808,922	54,268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354,849	10,645
대지보상 특별회계	570,000	17,100
기반시설 특별회계	105	3
수질개선 특별회계	28,491,708	854,751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3,229,795	96,894
균형발전특별회계	21,117,844	633,53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55,900	28,67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0,520,469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1,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